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차의 날’ 지정 근거 마련〉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95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차의 날’ 지정 근거 마련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차문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삶의 일상과 정신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고 차를 통한 의례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예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 ‘차의 날’은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 등을 치루고 있어 차산업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차의 날’ 지정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재 민간에서 5월 25일을 ‘차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16조의2(차의 날) ①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차(茶)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생산 및 소비되고 향유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700여호 농가에 의하여 3~4천톤 규모로 차가 생산되며 차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 하동 지역의 전통차 농업이 2017년 11월에 UN이 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된 바도 있음.

## 【 최근 3년간('22~'24) 차산업 관련 현황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경작면적(ha) | 2,655 | 2,624 | 2,683 |
| 재배농가(호)  | 2,682 | 2,720 | 2,683 |
| 생산량(톤)   | 3,581 | 4,185 | 3,685 |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개정안은 이와 같이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는 차에 대하여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차문화를 홍보하고 차산업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차 관련 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차를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기념일이 차에 관하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UN이 2019년에 정한 ‘세계 차의 날(International Tea Day)’인 매년 5월 21일로, UN 및 UNFAO<sup>1)</sup>는 차가 지니는 문화적 유산, 건강적 이점 및 경제적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 차의 날을 지정하였음.<sup>2)</sup>

제정 이후 UNFAO는 매년 5월 21일에 세계 차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sup>3)</sup>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3년 개최된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 세

1)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식량농업기구

2) <https://www.fao.org/international-tea-day/en>, 2026. 1. 8. 확인

계 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기념하고 있음.<sup>4)</sup>

둘째,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sup>5)</sup>가 1981년에 선포한 ‘차의 날’인 매년 5월 25일로, 이는 입춘 이후 약 100일이 경과하는 5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을 차의 날로서 선정한 것임.

해당 법인은 차의 날을 선포하면서 전통 차문화의 이해와 건전한 인간성 배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sup>6)</sup> 2015년에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차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차의 날을 기념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에서 후자인 매년 5월 2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민간에서 만든 기념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차의 날로 선정할 수 있는 날이 5월 21일과 5월 25일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중 어느 날을 차의 날로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에서 축적된 사회적 공감과 실천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

3) “On International Tea Day, FAO highlights tea’s role in inclusion, resil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25. 5. 21.

<https://www.fao.org/director-general/news/details/on-international-tea-day--fao-highlights-tea-s-role-in-inclusion--resilience--and-sustainable-development/en>, 2026. 1. 8. 확인

4) 하동군청, “하동세계차엑스포 ‘세계 차의 날’ 기념식 성료”, 2023. 5. 22. (2026. 1. 8. 확인)

5) 국내 차인(茶人)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현재 정갑윤 前 국회부의장(19대 국회)이 회장 직위를 수행 중에 있음

6) (사)한국차인연합회, <https://teaunion.or.kr>

한편, 차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 자체에는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이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안 부칙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sup>7)</sup>

|              |
|--------------|
| 문 의 처        |
| 02)6788-5416 |

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